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	2017도21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피 고 인	피고인 1 외 1인
상 고 인	피고인들
변 호 인	변호사 류석원(피고인 1을 위한 국선)
원 심 판 결	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8. 선고 2016노4896, 2017노1598-1 (병합)(분리) 판결 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노4896, 2017노1598 (병합)(분리) 판결
판 결 선 고	2019. 1. 31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

대법관 박정화 _____